

의안번호	2204961
의 퇴 인	박홍근 의원
회 답 일	2024.11.11.
추 계 번호	24E4938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면세 대상에 치료목적 동물혈액 추가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면세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의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5년 15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89억원(연평균 17.8억원) 증가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면세 안 제26조제1항	-1	-1	-1	-1	-1	-5	-1
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안 제47조, 제63조	-84	-129	-153	-40	-	-406	-101.5
가산세 안 제60조, 제68조의2	100	100	100	100	100	500	100
합 계	15	-30	-54	59	99	89	17.8

주: 지방소비세(25.3%)를 제외한 금액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26조제1항 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	면세 대상에 치료 등 목적 동물혈액을 추가하여 세수 감소	
2	제47조, 제63조 (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)	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으로 세수 감소	
3	제57조의2(수시부과의 결정)	수시부과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세수 증가	
4	제60조, 제68조의2 (가산세)	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으로 세수 증가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26조제1항 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	○	
2	제47조, 제63조 (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)	○	
3	제57조의2(수시부과의 결정)	×	추계 곤란
4	제60조, 제68조의2(가산세)	○	

2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 추계 내역

가.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26조제1항)

- 치료·예방·진단용 동물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1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7억원 감소

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26조제1항	-1	-1	-1	-1	-1	-5

주: 지방소비세(25.3%)를 제외한 금액임

나.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47조, 제63조)

-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과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특례제도 운영 당시의 연평균 세액공제 실적 증가율에 따라 2024년 이후 세액공제 실적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
 -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
- 2023년 세액공제 실적치(105억 8,800만원)에 과거 동일 특례 운영 당시 연평균 세액공제 실적 증가율(19.2%)을 적용하여 제도 유지기간 동안 세수효과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84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406억원 감소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47조, 제63조	-84	-129	-153	-40	-	-406

주: 지방소비세(25.3%)를 제외한 금액임

다. 정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60조, 제68조의2)

- 정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일반사업자 1%→2%, 간이사업자 0.5%→1%로 인상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최근의 가산세 과세 자료(기획재정부 제공자료) 내 포함되어 있는 정의위장 사업자분 가산세액 규모를 추정하고, 향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제
- 2021~2022년 ‘가산세액×정의위장 사업자 비중(가산세 건수 기준)’의 평균 수준으로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100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500억원 증가

정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60조, 제68조의2	100	100	100	100	100	500

주: 지방소비세(25.3%)를 제외한 금액임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	신홍철	
	박성은	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